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 의 자 : 정성국·서천호·이헌승
조승환·안상훈·김용태
박정훈·곽규택·백종현
김예지·김민전·김대식
서지영·김도읍 의원
(14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·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·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.

「대한민국헌법」과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에 ‘학부모’의 권리·책임·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,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.

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·지역학부모지원센터·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·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법률에 ‘부모 등 보호자’의 자녀교육·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·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(안

제18조의6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62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6제1항 중 “보호자”를 “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·양육·교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 및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교육, 상담,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해야 한다.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은 학부모지원센터(이하 “학부모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학부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
2.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·협력 역량 강화 지원
3.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
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862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(보호자의 의무 등) ① <u>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 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②·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862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6(보호자의 의무 등) ① <u>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 호·양육·교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</u> ----- ----- 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생의 교육 및 원활한 학교생활 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교육, 상담, 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해야 한다.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⑤ <u>제4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시· 도교육감은 학부모지원센터(이</u>

하 “학부모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학부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
2.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·협력 역량 강화 지원
3.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
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